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편람

202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2항,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

3. 평가대상기간 : 2020.1.1. ~ 2021.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2일)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계(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붙임2]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등급	기준
S등급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A등급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B등급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C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D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거부」 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 공표

6. 평가일정

- 평가실시 : 2022. 4. 28.(목) ~ 7. 29.(금)
 - ※ 기관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평가실시 기간은 「코로나19」 경보 수준 또는 외부전문가 일정에 따라 연장 가능
-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22. 9월(예정)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2. 10월(예정)
 -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검토·심의
 -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붙임3] 참조
-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 2023. 1월

7.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덧붙임1) 참조, **"4월 27일까지"** 제출]

- 기관이 자체평가 양식을 활용하여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의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K2B에 제출** [제출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덧붙임2) 참조]
-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 여부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에 따라 가점(최대 +10) 부여(A.4.1.2)

※ 제출양식 등 관련자료 확인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 평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자료실 → 평가 실시 알림 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

8. 기타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52-7030-102, 02-6924-8872)에게 문의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목 차

I. 평가 개요	1
----------------	---

※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대상 현황

II. 2022년 평가 세부추진 계획	13
----------------------------	----

III. 2022년 평가지표 개선요약	19
----------------------------	----

IV. 2022년 평가지표	25
----------------------	----



평가 개요

I. 평가 개요

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장비보유 수준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관의 수준 향상 유도 및 질(質) 높은 사업장 서비스 제고

☞ 법적 근거

- (법 제21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2 추진방침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123개 기관)
 - * 평가계획 공고 예정일('22.4.13.) 기준 지정일 1년 미만 기관 제외
- 공단 내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평가 실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실무 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기관의 평가 준비,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설명자료(편람 책자, 동영상) 제작·배포로 대체
- 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 평가반 구성·운영 및 워크숍 개최
- 그간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지표 보강 및 기준 강화
-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기관의 경쟁력 향상 및 사업주의 우수 기관 선택권 부여

3 그 간의 사업추진 경과

□ 주요 평가추진 경과

구분	'18년 평가	'20년 평가	'22년 평가(안)			
평가주체	공단	공단	공단			
평가기관	■ 공단 네트워크협력실	■ 공단 공공기관평가실	■ 공단 공공기관평가실			
평가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평가분야	■ 2개 분야 ① 운영체계, ② 업무성과 * 기존의 평가사항 누락 없이 포함	■ 2개 분야 ① 운영체계, ② 업무성과 * 기존의 평가사항 누락 없이 포함	■ 2개 분야 ① 운영체계, ② 업무성과 * 기존의 평가사항 누락 없이 포함			
평가문항	■ 23개 항목 47개 문항 * 인적자원 보유·관리 분야 등 강화	■ 24개 항목 47개 문항 *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신설(1항목) * MSDS 항목 통합(2항목→1항목)	■ 22개 항목 48개 문항 * 문서화 여부 적용 및 배점강화, 현장평가 문항 신설 등			
등급 및 점수	■ 5단계 평가등급 (1,000점 만점) [S, A, B, C, D]	■ 5단계 평가등급 (1,000점 만점) [S, A, B, C, D]	■ 5단계 평가등급 (1,000점 만점) [S, A, B, C, D]			
	등급	점수분포	등급	점수분포	등급	점수분포
	S등급	900점 이상	S등급	900점 이상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899점 미만	A등급	800~899점	A등급	800~899점
	B등급	600~799점 미만	B등급	700~799점	B등급	700~799점
C등급	400~599점 미만	C등급	600~699점	C등급	600~699점	
D등급	4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① 점검면제, ② 정부포상 우선 추천, ③ 민간위탁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④ 홈페이지 공개 ■ 불량기관 제재 ① 위탁사업장까지 점검, ② 정부포상 제외, ③ 민간위탁사업 참여 배제					

□ 그 간의 평가결과 현황

등급 구간	2018년(최초평가)		2020년	
	기관수(개소)	점유율(%)	기관수(개소)	점유율(%)
총 계	111	100	118	100
S등급	0	0	0	0
A등급	6	5.4	16	13.6
B등급	84	75.7	54	45.8
C등급	21	18.9	34	28.8
D등급	0	0	14	11.9

4 평가대상 및 추진절차

□ 평가기간 : '22. 4월 ~ 7월

* 상황에 따라 평가일정 변경 가능

□ 평가대상 :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 12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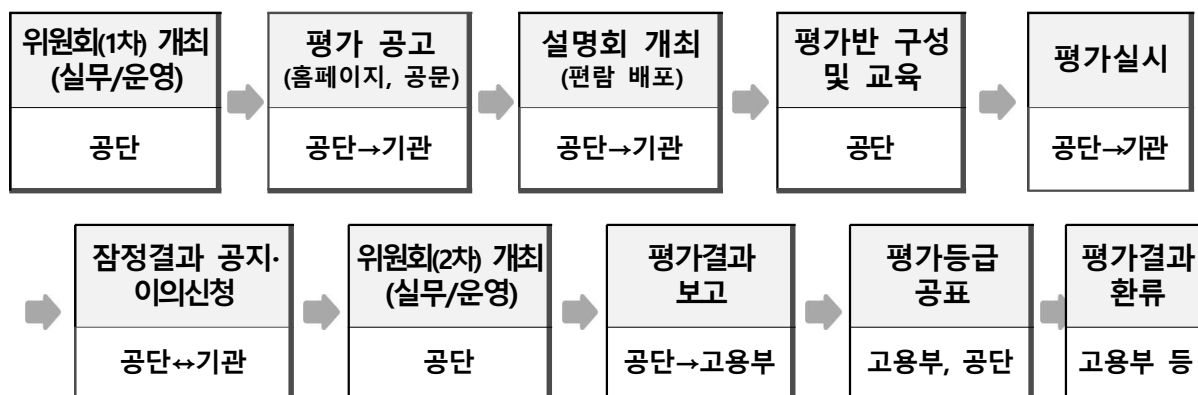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보건관리전문기관	123	17	47	18	15	8	18

* 공고일 기준 지정일 1년 미만 기관 제외

□ 평가대상기간 : 최근 2년간 업무 (2020.01.01. ~ 2021.12.31.)

□ 추진절차



참고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대상 현황(123개소)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1	서울청	2021-03-31	주식회사홍익산업보건센터	서울 구로구 항동로3길 4 (항동, 와이제이프라자) 6층 606호
2	서울청	2021-03-24	창조산업보건서울센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언남11길 23 (양재동) 301호
3	서울청	2020-06-09	사단법인한국안전보건협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0 (가산동, 가산골드타워 303, 304, 305호) (55-20번지에이스하이테크시티1동 1107호)
4	서울청	2020-03-23	(주)서울산업보건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53길 12-7 (구의동) 2층
5	서울청	2019-04-02	(주)민중산업보건센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2 (당산동3가) 304호
6	서울청	2018-07-05	창조산업보건센터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언남11길23 (양재동, 덕흥빌딩) 2층 201호
7	서울청	2016-08-23	소중한산업보건연구소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8 0동 8층 814호
8	서울청	2016-03-08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면목동) (568번지 1호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
9	서울청	2015-05-22	(주)한국보건환경연구소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87 (성수동2가, 성문빌딩) 2층(309-148번지 협성빌딩 602호)
10	서울청	2012-10-15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 36 (잠원동, 용진빌딩) 2층
11	서울청	2012-01-18	(재단법인)한국의학연구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세종빌딩 5층 (당주동) (100번지 세종빌딩 5층)
12	서울청	2011-05-02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반포동) (505번지)
13	서울청	2003-02-17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2층 210호 (가산동) (60-4번지 2층 210호)
14	서울청	2002-02-19	(재)씨젠의료재단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20 (용답동) (2-3번지)
15	서울청	1995-10-20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59 순천향대학교병원 (한남동 657-138)
16	서울청	1994-06-18	경희의료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회기동, 경희의료원 총무팀) (36-8번지 경희의료원 총무팀)
17	서울청	1993-03-24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사근동, 한양대학부속병원) (110번지 한양대학부속병원)
18	중부청	2021-04-09	에이치앤에스산업보건 연구소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제비 815호 (영천동 360-2)
19	중부청	2020-07-27	한도산업보건센터(주)	경기 시흥시 군자로487번길 3 (거모동) 301호 (거모동 1726-9)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20	중 부 청	2020-05-18	우리안전보건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7 (신동, 에이스하이엔드 타워 영통) 319호 (신동 338)
21	중 부 청	2020-02-07	사단법인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34-6 (향남읍)
22	중 부 청	2019-12-05	공감산업연구소 주식회사	경기 의정부시 효자로 10 송산중앙프라자 706호 (민락동 732-3)
23	중 부 청	2019-09-10	산업안전보건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48번길 14 (야탑동, 엔즈빌오피스텔) 223호 (야탑동 342-3)
24	중 부 청	2019-08-12	사랑 산업 보건 컨설팅	강원 원주시 원일로 150-2 4층(학성동) (학성동 207-22)
25	중 부 청	2019-03-21	의료법인안은의료재단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0 (청천동) (302)
26	중 부 청	2019-01-11	보건관리 전문기관 벳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57 701호 (안양동, 두산명학 아너비즈타워)
27	중 부 청	2018-06-15	라움보건환경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82 2층 (왕림리) (294-2번지 왕림리 2층)
28	중 부 청	2018-04-12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장기동) (1764번지 1764)
29	중 부 청	2017-04-28	주식회사 이에이치에스프렌즈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3층 1322호 (원미동) (39-1번지 13층 1322호)
30	중 부 청	2017-04-21	고려대부속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잔동) (516)
31	중 부 청	2017-03-15	경인산업보건컨설팅	경기 부천시 오정로252번길 41 세종아파트 205동 210호
32	중 부 청	2017-01-02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동해병원) (190번지)
33	중 부 청	2016-08-08	(주)성미산업컨설팅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150 (민락동, 민락주공2단지) 203동 1601호 (민락동 695-1)
34	중 부 청	2015-09-25	주식회사우진산업보건연구원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636번길 37 (내삼미동) 302호
35	중 부 청	2014-12-31	주식회사단원산업보건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64 (초지동) 410호
36	중 부 청	2013-02-07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	경기 김포시 감암로 11 (걸포동) (389-14번지)
37	중 부 청	2013-01-22	케이아이안전보건기술원(주)	인천 서구 검암로30번길 10 201호 (검암동) (506-3번지 201호)
38	중 부 청	2011-04-19	의료법인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98 (동춘동) (937-3번지)
39	중 부 청	2010-12-16	굿모닝산업보건센터 (주)	경기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43-8 (합정동) 3층 (875-13번지)
40	중 부 청	2010-09-06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97-3)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41	중 부 청	2010-09-01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환경보건연구센터)	강원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관동대학교 (내곡동 522-0)
42	중 부 청	2010-03-31	온누리병원	인천 서구 완정로 199 (왕길동) (635-1)
43	중 부 청	2009-04-01	경기산업보건센터(주)	경기 의정부시 가능로 9 (가능동, 수신빌딩) (685-11번지)
44	중 부 청	2008-06-09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37 (정왕동) (1366-11번지)
45	중 부 청	2007-10-15	의료법인청천의료재단	경기 안성시 시장길 58 (서인동) (14번지)
46	중 부 청	2007-05-04	(주)경희산업보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 2층 씨-238호 (신길동, 리드 스마트스퀘어 지식산업센터)
47	중 부 청	2006-12-13	(주)한국산업보건연구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0 4층 (서둔동) (17-150번지 4층)
48	중 부 청	2006-11-01	(주)중앙안전보건연구원	경기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1 2층
49	중 부 청	2006-04-18	수원중앙병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54 수원중앙병원 (권선동 967-1)
50	중 부 청	2006-03-27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 미디어시티빌딩 5층 (인계동)
51	중 부 청	2005-12-28	(주)한성산업의학연구소	경기 군포시 산본로86번길 1-1 (당정동) (949-9번지 덕우빌딩 2층)
52	중 부 청	2005-11-28	나은병원	인천 서구 원적로 23 나은병원 (가좌동 277-7)
53	중 부 청	2004-07-30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	경기 시흥시 군자천로 381 (정왕동)
54	중 부 청	2003-06-09	부천대성병원	경기 부천시 부천로 91 (심곡동)
55	중 부 청	2003-03-03	(재단법인)제일산업의학 연구소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334 202, 301, 302, 401, 501 (정왕동) (은성빌딩)
56	중 부 청	2001-06-01	의료법인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안양샘병원 인사총무팀 (안양동)
57	중 부 청	1999-06-20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47-15번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58	중 부 청	1999-04-06	(주)한국안전환경연구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77 2층 (권선동) (1057-11번지 2층)
59	중 부 청	1998-03-23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	인천 중구 인항로 27 (신흥동3가) (7-206)
60	중 부 청	1995-12-23	(주)용인서울산업보건 연구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38 (511-3번지 2층)
61	중 부 청	1995-03-30	(의료법인)진성연세모두 의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78 시그마3 3층 302호 (야탑동)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62	중 부 청	1995-03-08	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우만동) (441번지)
63	중 부 청	1991-12-12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일동) (95번지)
64	중 부 청	1988-05-02	(의료법인)길의료재단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구월동) (1198번지)
65	부 산 청	2021-01-19	(의료법인)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제1호 (삼계동) (392-1번지 제1호)
66	부 산 청	2018-04-23	의료법인갑을재단갑을녹산 병원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8 (송정동, 갑을녹산병원) (1627-2번지 갑을녹산병원)
67	부 산 청	2016-11-11	제일병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제일병원) (241번지 제일병원)
68	부 산 청	2016-03-04	의료법인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당감동) (966번지)
69	부 산 청	2016-01-29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성균관의대마산삼성병원
70	부 산 청	2015-08-19	한국직업환경의학연구소 (주)	부산 수영구 광일로43번길 31 (광안동)
71	부 산 청	2012-01-12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경희 대학교교육협력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김해중앙병원) (1044-5번지 김해중앙병원)
72	부 산 청	2010-04-01	굿모닝병원	울산 남구 달동 972번지
73	부 산 청	2009-06-04	(주)터직업환경의학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39번길 6 제일상가 (중앙동 100-6)
74	부 산 청	2003-12-08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 병원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전하동) (290-3번지)
75	부 산 청	1998-12-08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명서동)
76	부 산 청	1997-11-25	진주고려병원	경남 진주시 동진로 2 (칠암동) (485-2번지)
77	부 산 청	1995-05-26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총무부 (개금동) (633-165번지 총무부)
78	부 산 청	1991-06-19	(사)대한산업보건협회부산 경남지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39 (청룡동) (80-4)
79	부 산 청	1991-06-19	(의)동강의료재단	울산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80	부 산 청	1991-05-01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창원병원) (104-1번지)
81	부 산 청	1991-04-24	(의료법인)대우의료재단	경남 거제시 두모길 16 (두모동, 대우병원) (459번지 대우병원)
82	부 산 청	1987-03-09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의료원 (암남동) (34번지 고신의료원)
83	대 구 청	2018-04-03	(의료법인)안동의료재단	경북 안동시 양실로 11 (수상동) (574-2번지)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84	대 구 청	2017-12-14	(주)이에이치에스연구소	대구 북구 연경지묘로 8 503호
85	대 구 청	2015-07-20	대한보건환경연구소(주)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76 (대잠동, 학림빌딩) 3층
86	대 구 청	2014-12-17	(주)중앙직업환경보건센터	경북 경산시 경안로 7 (백천동) 3층
87	대 구 청	2012-03-29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	경북 경산시 경안로 208 (중방동) (848-4번지)
88	대 구 청	2008-12-16	구미강동병원	경북 구미시 인동20길 46 (진평동) 210-2번지
89	대 구 청	2007-06-21	(주)대구가톨릭산업보건센터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갈산동) (123-4번지)
90	대 구 청	2006-06-20	(사)대한산업보건협회대구 경북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40 (호림동) (19-15번지)
91	대 구 청	1999-06-30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 영남이공대학교 (대명동 317-1)
92	대 구 청	1997-05-17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석장동) (1090-1번지)
93	대 구 청	1997-04-08	(재단법인)포항성모병원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대잠동) (270-1번지)
94	대 구 청	1997-01-17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 (모전동) (188)
95	대 구 청	1994-11-08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000-2번지)
96	대 구 청	1991-05-27	(재단법인)안동성소병원 유지재단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99 (금곡동) (177)
97	대 구 청	1991-03-13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79 (공단동, 순천향병원) 250번지
98	광 주 청	2016-07-13	김병원산업보건센터주식회사	광주 동구 중앙로 211 6층 (대인동) (158-3번지 6층)
99	광 주 청	2016-02-17	대자인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훤로 390 (우아동3가, 대자인병원) (734-16번지 대자인병원)
100	광 주 청	2015-05-28	유한회사한길산업보건연구소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월전동,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603호 (685-44번지)
101	광 주 청	2011-03-14	의료법인청연의료재단순천 제일병원	전남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3 (조례동) (1589-1번지)
102	광 주 청	2010-04-12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815-8번지)
103	광 주 청	2009-01-01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조례동, 순천병원) (544번지)
104	광 주 청	2008-04-07	(재)한국의학연구소광주 분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58 (치평동) 타임스타워 8~10F
105	광 주 청	1991-04-30	(사)대한산업보건협회광주 전남북지역본부	광주 광산구 사암로 414 (흑석동) (534번지)

연번	지정관서	지정일자	기관명	주소
106	대 전 청	2018-06-08	명지안전보건연구소(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청당동) 선우법조타운 501호 (331번지 예산명지병원 산업보건센터 2층 작업환경측정실)
107	대 전 청	2018-04-26	(주)한국직업환경의학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7 청록담 빌딩 203호
108	대 전 청	2016-02-12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6 (영운동, 한국병원) (158-11번지 한국병원)
109	대 전 청	2016-01-21	에이스산업보건연구소 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2길 67 (성정동) 301호
110	대 전 청	2015-03-13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로 239-50
111	대 전 청	2013-02-08	(주)한국직업환경연구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29 (3층)
112	대 전 청	2012-11-21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 (가경동) (566)
113	대 전 청	2011-09-19	(주)미래보건환경연구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6길 31 (1649-6번지)
114	대 전 청	2009-09-17	의료법인백제병원	충남 논산시 취암동 21-14번지
115	대 전 청	2009-05-01	(사)대한산업보건협회대전 충남북지역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03 (문평동) (82-2번지)
116	대 전 청	2009-04-27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사직동)
117	대 전 청	2007-03-27	제이에스산업보건연구소(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주로 64 5층 (직산읍 삼은리 442-2)
118	대 전 청	2000-12-04	학교법인을지학원대전을지 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1306번지)
119	대 전 청	1999-11-23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 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봉명동,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216-6번지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120	대 전 청	1999-11-2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산16-5)
121	대 전 청	1999-05-24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쌍용동, 충무병원) (542-3번지)
122	대 전 청	1998-11-16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씨엠아이의원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아트리움 B1 (둔산동)
123	대 전 청	1993-06-17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대전중앙병원) (285-3번지)

2022년 평가
세부추진 계획

II. 2022년 평가 세부추진 계획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 실무위원회(1차)

- (일 자) '22. 04. 01.(금)
- (내 용)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심의·검토

☐ 평가 운영위원회(1차)

- (일 자) '22. 04. 08.(금)
- (내 용)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2 주요 일정 및 내용

☐ 평가 공고

- (일 자) '22. 04. 13.(수)
- (내 용) 평가기준,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
- (방 법)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후 기관별 공문·편람 우편발송

☐ 평가 설명회 개최

-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설명회를 지양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평가 설명 동영상 게시로 대체
- 평가지표 관련 상담반을 운영하여 관련 문의사항 응대
※ 상담반 : 본부(김효규 차장), 평가센터(최수진 차장)

☐ 평가반 구성

- 평가센터 직원 2인 1조로 구성
※ 필요시 외부전문가(공단 전환전문직 등) 활용
- 직급 및 해당분야 평가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

□ 평가반 사전교육

- (대 상)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평가자
- (일 정) 4월 중(1~2일간)
- (내 용) 평가반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 설정 등

□ 평가실시

- (평가일정) 4월 ~ 7월
 - ※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평가전에 평가반장이 주관하여 기관별 연락 후 평가일정 확정
- (평가소요일) 기관별 1~2일 소요
- (평가방법)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평가표(K2B)에 따라 5등급(S~D) 절대평가(1,000점 만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900점 이상	800 ~ 899점	700 ~ 799점	600 ~ 699점	600점미만

- 기관 방문 전 K2B에 등록된 자체평가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
- 방문평가지 대상기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 등 자료 제출 요구
-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평가항목) 운영체계분야(400점) 및 업무성과분야(600점)로 구성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문항수
A 운 영 체 계	소 계		400	22
	A.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50	2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210	9
	A.3	시설·장비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80	4
	A.4	사업장 관리	60 (-10~+10)	3
	가감점 항목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100~+10)	3
		A.6 종합화	(+10)	1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문항수
B 업 무 성 과	소 계		600	26
	B.1	기술지도의 충실성	480	19
	B.2	재해감소	70	2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50 (+20)	2
	가감점 항목	B.4 재해발생 및 산재은폐	(-200~+100)	3

※ ()는 가감점

□ 평가결과 통보

- (통보일자) 9월 중 평가기관별로 공문 통보(예정)
- (통보방법) 평가점수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공문으로 통보
 - 각 기관별 K2B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점수 확인

□ 이의신청 접수

- (일 정) 9월 중 평가기관별로 공문으로 이의신청 접수(예정)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접수
 - ※ 전국적 조직을 갖춘 기관의 경우 일괄 이의제기 불가
 - ※ 이의신청 기간 이외 신청 건에 대해서는 반려처리

□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 (재평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관 전수
 - ※ 이의제기 내용에 대하여 내부 검토(실무회의 등)하여 재평가(방문평가)여부 결정
 - 원칙적으로 최초 평가를 실시한 평가반에서 수행
- (결과통보) 검토결과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기관 통보

□ 평가 실무/운영위원회(2차) 개최

- 평가 실무위원회(2차)
 - (일 자) 10월 중(예정)
 - (내 용)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사항 검토, 차기 평가 시 반영 필요 사항 검토 등
- 평가 운영위원회(2차)
 - (일 자) 10월 중(예정)
 - (내 용) 평가등급 검토 및 확정, 차기 평가 시 평가지표 개선사항 검토 및 확정 등

□ 최종 평가결과 보고, 공개 및 활용

○ (최종 평가결과 보고)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

- 공단은 종합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보고

* 평가항목별·지역별·기관종류별 등 평가결과를 다각적·구체적 분석

○ (결과 공개) '23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 공표(예정)

-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 게재
- 평가제외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를 기재하고 명단 공개

○ (결과 활용) 평가결과 우수기관(S등급)은 점검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평가결과 불량기관(C~D등급)은 감독강화 및 민간위탁 사업 배제(예정) 등



2022년 평가지표 개선요약

□ 평가항목 신규대비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문항수		배점		
			'20년	'22년	'20년	'22년	
합 계			47	48	1,000	1,000	
A 운 영 체 계	소 계		22	22	400	400	
	A.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1	1	30	30	
		2 업무관리체계	1	1	20	2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1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3	3	90	90	
		2 직원 교육훈련 실시	6	6	120	12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1 장비의 유지, 관리 적정성	2	2	40	40	
		2 장비활용 실적	1	1	30	30	
		3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1	1	10	10	
	A.4 사업장 관리	1 업무 표준의 수립	2	2	30	20 (-10~+10)	
		2 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관리	1	1	30	40	
	가 감 점 항 목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1	1	최대 +10	최대 +10
			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개월수별 - 15점, 최대 -80점)	1	1	최대 -80	최대 -80
			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건별 - 2점, 최대 -20점)	1	1	최대 -20	최대 -20
		A.6 종합화	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1	1	최대 +10	최대 +10
B 업 무 성 과	소 계		25	26	600	600	
	B.1 기술지도의 충실성	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8	8	190	190	
		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8	8	200	200	
		3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1	1	50	50	
		4 위험성평가 신청 및 인정율	1	1	40	40	
		5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신설)	-	1	-	최대 -30	
	B.2 재해감소	2.1 업무상 질병 재해율 감소 성과	1	1	50	50	
		2.2 사업장 기업건강지수 보급률	1	1	20	20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3.1 지도사업장 만족도	1	1	40	40	
		3.2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노력도	1	1	10 (+20)	10 (+20)	
	가 감 점 항 목	B.4 재해발생 및 산재은폐	4.1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건별 - 10점, 최대 - 100점)	1	1	최대 -100	최대 -100
			4.2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건별 - 10점, 최대 - 100점)	1	1	최대 -100	최대 -100
			4.3 기술지도 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 (건별 20점, 최대 100점)	1	1	최대 +100	최대 +100

1 운영체계(400점)

□ (주요 변경사항)

- 타분야(안전관리전문기관 등)와 평가체계 통일성 확보를 위한 「문서화 여부」 감점(최대 -5점) 항목 신설
 - 적용항목 : A.1.1, A.1.2, A.2.2.1, A.3.1.1, A.4.1.1
- 평가기준 고도화·배점 조정, 문항 삭제·신설

기준('20년)	변경('22년)
A.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A.4 사업장 관리	A.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문서화 여부 감점 방법 변경)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문서화 여부 감점 항목 신설)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문서화 여부 감점 항목 신설) A.4 사업장 관리 (문서화 여부 감점 항목 신설) (삭제 후 변경 신설(1문항)) (평가기준 고도화 및 배점 강화(1문항))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20년 문항	'20년 배점	'22년 배점	비고
A 운 영 체 계	A.4 사업장 관리	A.4.1 업무 표준의 수립	A.4.1.2	10	-10 ~ +10	삭제 후 변경 신설(가감점)
		A.4.2 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관리	A.4.2	30	40	평가기준 고도화 및 배점 강화

2 업무성과(600점)

□ (주요 변경사항)

- B.1.5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 항목 신설
- 문항 신설 및 이에 따른 일부항목 평가기준 변경(샘플 수 축소)

기존('20년)	변경('22년)
B.1 기술지도의 충실성 B.2 재해감소	B.1 기술지도의 충실성 (문항 신설(1문항)) (평가기준 변경) B.2 재해감소 (평가기준 변경)

- 문항 신설 및 이에 따른 일부항목 평가기준 변경(샘플 수 축소)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20년 문항	'20년 배점	'22년 배점	비고
B 업 무 성 과	B.1 기술지도의 충실성	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B.1.1.2	20	20	평가기준 변경
				B.1.1.4	20	20	
				B.1.1.5	10	10	
				B.1.1.6	40	40	
				B.1.1.7	20	20	
				B.1.1.8	20	20	
		1.5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		-	-	최대 -30	신설
		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B.1.2.1	30	30	평가기준 변경
				B.1.2.2	20	20	
				B.1.2.3	20	20	
				B.1.2.4	30	30	
				B.1.2.5	20	20	
				B.1.2.6	30	30	
				B.1.2.7	30	30	
				B.1.2.8	20	20	
	B.2 재해감소	2.2 사업장 기업건강지수 보급률		B.2.2	20	20	평가기준 변경



2022년 평가지표

□ 평가항목 총괄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합 계					1,000
A 운 영 체 계	소 계				400
	A.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30
			2 업무관리체계		2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1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90
			2 직원 교육훈련 실시		12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1 장비의 유지, 관리 적정성		40
			2 장비활용 실적		30
			3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10
	A.4	사업장 관리	1 업무 표준의 수립		20 (-10~+10)
			2 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관리		40
가 감 점 항 목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최대 +10	
		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개월수별 - 15점, 최대 -80점)		최대 -80	
		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건별 - 2점, 최대 -20점)		최대 -20	
	A.6 종합화		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최대 +10
B 업 무 성 과	소 계				600
	B.1	기술지도의 충실성	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190
			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200
			3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50
			4 위험성평가 신청 및 인정율		40
			5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신설)		최대 -30
	B.2	재해감소	2.1 업무상 질병 재해율 감소 성과		50
			2.2 사업장 기업건강지수 보급률		20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3.1 지도사업장 만족도		40
			3.2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노력도		10 (+20)
	가 감 점 항 목	B.4 재해발생 및 산재은폐	4.1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건별 - 10점, 최대 - 100점)		최대 -100
			4.2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건별 - 10점, 최대 - 100점)		최대 -100
			4.3 기술지도 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 (건별 20점, 최대 100점)		최대 +100

문서화 여부 평가 공통적용 사항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

☐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

- 문서화란 결재를 득한 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가 기입된 문서만 인정

평 가 기 준	감점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 및 문서상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및 결재를 득함	감점 없음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하나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또는 결재가 없음	-2점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를 하지 않고 문서상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또는 결재가 없음	-3점
㉣ 기록물관리기준이 없으며, 문서화 하지 않음	-5점

※ 국가 기록물 사무관리 지침에 따라 문서관리를 하는 경우 위의 기준을 적용하고, 기관 자체 문서관리 규정(지침)이 있을 시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지표 항목별 감점 적용결과 득점 점수가 해당항목 최저점수 이하인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

☐ 해당 항목에서 특정한 언급이 없는 경우, 평가 산식에 따른 계산 값은 소수점 이하 올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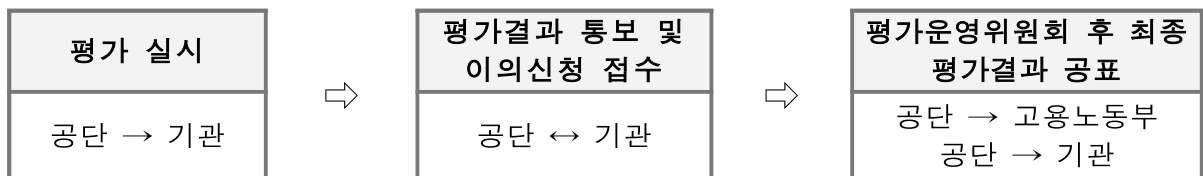
☐ 인력 적용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기간 내 1/2 이상 고용유지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

☐ 평가대상기간은 2020.1.1.~2021.12.31. 기준임

☐ 최종 평가결과 확정시기

- 이의신청 접수를 위해 통보된 평가점수는 최종 결과가 아님
- 최종 등급결정은 이의신청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평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평가결과 확정 및 공표】



☐ 최종 평가결과 운영체계(400점), 업무성과(600점) 중 가점을 득하더라도 만점을 넘을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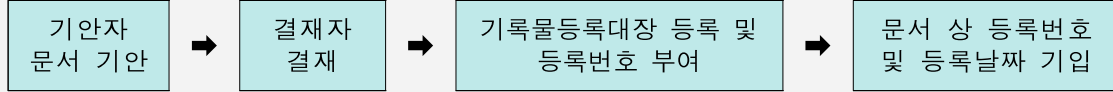
문서화 여부 평가 공통적용 사항

기록물등록대장 등록 및 문서상 표기방법

1. 기록물등록대장 문서 등록방법

① (생산문서) 결재자의 결재가 끝난 후 등록 및 (생산)등록번호 부여

※ 생산문서 : 외부 발송문서 및 내부결재 문서



② (접수문서) 접수와 동시에 등록 및 (접수)등록번호 부여 후 결재자 결재



2. 기록물등록대장 작성양식 및 방법

- ❖ 기록물등록대장 작성양식의 ①~⑧ 내용은 필수기입 사항임
- ❖ 필수기입 사항 외 기관 필요에 따라 내용 추가 가능

【기록물등록대장 작성양식】

등록 구분	생산(접수) 등록일자	생산(접수) 등록번호	제목	결재권자	기안자 (업무담당자)	수신자 (발신자)	기록물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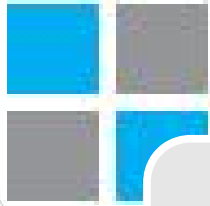
【기록물등록대장 작성방법】

- ① 등록구분 : 생산 / 발송 / 접수 중 선택하여 기입
- ② 생산(접수)등록일자 : 생산 또는 접수 기록물의 등록 일자를 기입(예 : 2019. 1. 1.)
- ③ 생산(접수)등록번호 : 처리부서(기관)명(코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
- ④ 제목 : 해당 문서의 제목을 기입
- ⑤ 결재권자 : 결재권자 기입
- ⑥ 기안자(업무담당자) : (생산·발송문서) 기안자의 성명을, (접수문서) 업무담당자의 성명 기입
- ⑦ 수신자(발신자) : (생산) 내부결재로 기입, (발송) 해당 문서 수신 기관 기입, (접수) 해당 문서 발송 기관 기입
- ⑧ 기록물철 : 해당 기록물이 편철되는 기록물철명

3. 접수인 활용

- ❖ 기관 기안문 양식에 등록번호, 등록날짜, 결재란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 그대로 사용
- ❖ 기관 기안문 양식에 등록번호, 등록날짜, 결재란이 없는 경우 “접수인”을 제작 활용

생산(접수)등록번호	○○○사업부(기관) - 001		
생산(접수)등록일자	20 . 1. 1.		
결 재	기안자	검 토 자	결재자
	(서명)	(서명)	(서명) (결재일자)



A. 운영체제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1.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배점: 30)	
평가항목 A.1.1	평가기준 (배점: 30, 감점: -5)	평가결과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①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이 양호하고 정기적인 자체평가 및 보완 등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 30
	②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이 양호하나 자체평가 및 보완 등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 20
	③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경우	☐ 10
	④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이 없는 경우	☐ 0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가취지	○ 연간 운영방침 및 수탁사업장 관리 등 사업계획 수립/평가/기록 및 유지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체계적인 보건관리를 통한 현장의 보건관리 내실화 향상 및 개선 활동 제고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방침 및 사업(업무) 계획 수립의 적정성 평가 ○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문서화 여부, 내용의 충실도(운영방침, 목표관리, 인력별 운영 계획 등), 기록관리 등 수립된 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여부,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통한 보완사항 등을 사업에 반영하는지 여부 평가 ☐ 판단기준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계획] ○ ①운영방침, ②목표관리(업무상질병 감소, 질식재해 감소 등), ③인력별(의사, 간호사, 산업 위생 분야) 운영계획, ④수탁사업장 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 - 위 4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작성내용이 적정하면 “양호”, 일부라도 누락되거나 작성 내용이 적정하지 않으면 “미흡” [자체평가 및 보완 등 개선노력] ○ 수탁관리 사업장별 기록 관리, 정기적인 ①자체평가 및 ②보완(개선) 사항 반영 결과물 등이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증빙서류	○ 기관 및 수탁사업장의 연간 보건관리 수탁(대행) 관련 사업계획, 자체평가개선결과물	

A.1.2	업무관리체계 (배점: 20)	
평가항목 A.1.2	평가기준 (배점: 20, 감점: -5)	평가결과
업무관리체계 (업무분장)	①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적정하고, 보건관리 수탁 업무 관련 보고서(서류)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	☐ 20
	②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적정하나, 보건관리 수탁 업무 관련 보고서(서류)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미흡한 경우	☐ 10
	③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미흡하거나 보건관리 수탁업무 관련 보고서(서류)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미흡한 경우	☐ 5
	④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되어있지 않거나 관행적으로 분장하여 시행하는 경우	☐ 0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 가 취 지	○ 기관의 조직 및 업무분장, 문서관리 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수탁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방 사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내 기관의 조직도, 업무분장, 문서관리, 권한과 임무, 수탁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서화 및 실질적인 실행여부를 평가 ☐ 판단기준 ○ 조직도 및 업무분장은 업무 총괄책임자, 책임구역 또는 사업장을 명확히 하고, 대행요원별 유기적인 업무 협조 및 장비 책임자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 등 직종별 업무분장 적정성 및 누락여부 확인 ※ 인력 변경 시 수행인력 변경등록일 기준 30일 이내 업무 분장을 최신화하여야 함 ○ 보건관리상태보고서 및 사업장 관리카드 등 수탁업무 관련 보고서(서류)가 문서화된 업무 분장에 따라 명확히 작성되고,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증빙서류	○ 조직도·업무분장표 등 문서화된 서류, 상태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 결재관련 서류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A.2.1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배점: 90)				
평가항목 A.2.1.1	평가기준 (배점: 40)			평가결과	
법정인력의 경력	① 개인별 평균 배점이 4.2점 이상			☐ 40	
	② 개인별 평균 배점이 3.7점 이상			☐ 30	
	③ 개인별 평균 배점이 3.2점 이상			☐ 20	
	④ 개인별 평균 배점이 3.2점 미만			☐ 10	
평 가 취 지					
○ 수탁 업무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자격별 경력 연수(누적)를 토대로 기관의 전문 인력 보유 수준을 평가하여 현장 보건관리 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평 가 내 용					
☐ 평가대상					
대상인력		적용요건			
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 (추가인력 평가 제외)		1)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이직자, 퇴직자 포함) 2)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 의사, 기술사,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 수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 제외 6) 업무분장 상에 포함			
* 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참고					
☐ 경력 산정 기준					
○ 산업보건·위생분야 : 자격 취득 후 사업장 보건관리자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의 산업보건·위생분야 실무경력					
○ 의사, 간호사 분야 : 면허 취득 후 사업장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 일반건강진단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산업보건분야 실무 경력					
※ 단, 일반병원 등 일반 보건 경력 제외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평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평균 배점 산출방법					
① 자격별 실무경력 누적연수를 토대로 하단 <표>에서 개인별 점수 산출 후					
② 개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대상인원 수로 나누어 평균 배점 산출					
구분	자 격	산업보건 실무 경력 누적연수(1인당)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5.0	4.5	4.0	3.5
㉡	산업위생관리기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5	4.0	3.5	3.0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4.0	3.5	3.0	2.5
㉣	직업환경의학/예방의학 전문의	5.0			4.5
㉤	「의료법」에 따른 의사	5.0	4.5	4.0	3.5
예)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경력 7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1명(경력 3년), 간호사 2명(경력 16년, 경력 14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명(경력 2년)일 경우 $(4.0\text{점}+2.5\text{점}+(4.5\text{점}+4.0\text{점})+4.5\text{점}) / 5\text{명} = 3.9\text{점} \rightarrow '30'$					
증빙서류					
○ 자격증, 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A.2.1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배점: 90)		
평가항목 A.2.1.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	①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6점 이상	☐ 20	
	②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4점 이상	☐ 15	
	③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2점 이상	☐ 10	
	④ 전문인력 추가확보가 없는 경우	☐ 5	
평 가 취 지			
○ 법정 보유 기준 최소 인력을 제외한 전문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하여 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법정 필수 인력을 제외한 추가로 지정된 채용 인력에 대하여 자격(면허)증,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대장, 근무형태, 출근부, 업무일지, 상태보고서 서명 여부 등을 중점 확인			
☐ 평가대상			
대상인력		적용요건	
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을 "초과"하여 지정된 인력		1)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이직자, 퇴직자 포함) 2)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 의사, 기술사,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 수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 제외 6) 업무분장 상에 포함	
* 추가인력이 겸직인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참고), 해당 점수의 50% 반영			
☐ 자격별 합산점수 산출방법			
구분	①의사, 지도사, 기술사, 산업전문간호사	②기사, 간호사	③산업기사
자격별 가중치	6점	4점	2점
합산점수 산출산식	$\sum$ 자격 분야별 추가 인원 $\times$ 자격별 가중치 = _____ 점		
※ 1인이 다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상위 자격 1개 점수만 적용 ※ 지도사 기관은 평가 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A.2.1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배점: 90)	
평가항목 A.2.1.3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법정인력 업무전문화 노력 (업무전담 및 정규직화)	① 수탁한계사업장 : _____개소 이하 ② 시행령 [별표8] 자격별 인력의 합 : _____명 - 가) 인력 : _____명×2(가중치) = _____명 - 나),다),라) 인력 : _____명(인원수) ③ 법정인력 중 정규직 인력의 합 : _____명 - 가) 인력 : _____명×2(가중치) = _____명 - 나),다),라) 인력 : _____명(인원수) ⇒ (③÷②)×30점 = _____점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_____점 (최대 30점)
평 가 취 지		
○ 전체인력 중 정규직 인력 비율에 대한 평가로 업무전담 및 인력의 정규직화 노력 수준을 평가하여 현장의 안정적인 예방활동 전개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수탁한계사업장수에 따른 법정 인력기준 인원수 대비 법정 최소 정원의 정규직 현원 비율로 평가		
☐ 평가대상		
대상인력 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 (추가인력 평가 제외)	적용요건 1)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이직자, 퇴직자 포함) 2)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 의사, 기술사,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 수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6) 업무분장 상에 포함	
※ 지도사 기관은 평가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부, 자격(면허)증 등		

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120)	
평가항목 A.2.2.1	평가기준 (배점: 20, 감점: -5)	평가결과
지도요원 교육· 훈련계획 수립· 이행 여부	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모든 인력이 이행한 경우	☐ 20
	②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률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③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이행률이 60% 미만인 경우	☐ 0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 가 취 지		
○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수준을 평가하여 지도요원 전문성 향상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매년 지도요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종합계획 등 수립 가능)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함 * 교육·훈련 : ①내부교육, ②전문화교육, ③세미나, ④학술대회 등 ○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는 교육 이수증, 관련 문서 등을 확인		
☐ 평가대상 ○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을 유지한 법정 및 추가인력		
☐ 판단기준 ○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교육·훈련계획(①내부교육, ②전문화 교육 ③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중 1가지 이상 누락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신규 입사자는 입사 3개월 이내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고, 6개월 이내 실적을 확인 - 신규입사자 교육계획 및 이행 누락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증빙서류		
○ 교육·훈련 계획 관련 문서(교육 이수증)		

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120)	
평가항목 A.2.2.2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여부	① 모든 지도요원이 전문교육을 적정하게 이수	☐ 30
	② 일부 지도요원이 전문교육을 이수	☐ 15
	③ 지도요원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	☐ 0
평가취지	○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전문교육 이수를 유도하여 지도요원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함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소속인력에 대한 교육이수증 등을 확인하여 평가 대상기간 중 전문교육 이수여부를 평가 ☐ 평가대상 ○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을 유지한 법정 및 추가인력 ☐ 평가기준 ○ 【인정기관】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또는 공단 ○ 【인정과정】 16시간의 전문화교육(인터넷 교육 포함)을 이수한 경우 ※ 산업보건분야 학회 전후에 실시하는 전문화(PDC)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평가 대상기간 중 이수한 전문교육에 대하여 평가하며, 신규 입사자 또는 이직자가 입사 전·후 이수한 교육이 평가 대상기간에 해당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 평가대상기간 내 신규입사자가 입사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없을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산업보건관련 교육으로 제한) ※ 법적인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은 제외 ☐ 판단기준 ○ 소속인력에 대한 전문화교육 이수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평가 - 모든 지도요원(개인별)이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16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30" - 모든 지도요원 50% 이상이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16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15" - 모든 지도요원 50% 미만이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16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0"	
증빙서류		
○ 교육 이수증		

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120)	
평가항목 A.2.2.3	평가기준 (배점: 10)	평가결과
기타 외부 일반교육 이수 여부	①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100%	☐ 10
	②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60% 이상	☐ 8
	③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40% 이상	☐ 6
	④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20% 이상	☐ 4
	⑤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20% 미만	☐ 2
평 가 취 지		
○ 지도요원의 전문화교육 외에 교양 등 일반교육 이수율을 평가하여 현장 보건관리 활동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소속인력에 대한 교육이수증 등을 확인하여 평가 대상기간 중 일반교육 이수 수준을 평가 - 외부 일반교육 과정별 수료증(이수증) 및 참석하였음이 증명되는 서류 등을 확인하고, 교육 과정별 이수시간을 바탕으로 평가		
☐ 평가방법 ○ 【인정기관】 외부 전문교육기관 ○ 【인정과정】 직무수행에 보조적인 일반교육을 이수한 경우(인터넷교육과정 포함) ※ 과정예시 : CS교육, 강사전문 과정, 통계, 기업진단, 청렴, 컴퓨터, 외국어 등 ○ 【인정조건】 최소 인정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4시간 미만의 교육을 다수 이수한 경우 평가대상기간 내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이상이면 이수한 것으로 평가		
☐ 평가대상 ○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을 유지한 법정 및 추가인력 ※ 단, 신규입사자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산식 ○ $\text{이수율}(\%) = (\text{외부일반교육 이수자수} \div \text{법정 및 추가 수행인력수}) \times 100$		
증빙서류		
○ 연간 교육·훈련 계획수립 문서, 기록물등록대장, 교육이수증		

A.2.2	지도요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120)	
평가항목 A.2.2.4	평가기준 (배점: 10)	평가결과
지도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① 지도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	☐ 10
	② 지도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 가 취 지	○ 소속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도요원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함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업무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 학위 수료(졸업), 대학의 강의 활동 지원, 외국어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등을 위한 기관장의 시간배려 또는 금전적 지원 실적 유무를 평가 ☐ 판단기준 ○ 지도요원의 능력개발 관련 내부규정이 “문서화” 되어있지 않거나, 연간 사업계획 등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없는 것으로 평가 ○ 시간 및 금전적 지원 실적은 관련 증빙문서(서류)가 있어야 함 (단, 도서구입은 실적에서 제외) 예시) 시간적배려 : 유급휴가, 유연근무제 시행 관련 문서 또는 서류 금전적지원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예산 집행 문서 또는 서류(예> 학원수강비, 응시료) ※ 지도사 기관은 평가 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증빙서류		
○ 증빙 문서(서류) 등		

A.2.2	지도요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120)	
평가항목 A.2.2.5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실태	①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4회 이상 운영	☐ 20
	②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3회 이상 운영	☐ 15
	③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2회 이상 운영	☐ 10
	④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1회 이상 운영	☐ 5
	⑤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운영하지 않음	☐ 0
평 가 취 지	○ 지식·정보의 공유를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여부 평가를 통한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자체 세미나 : 산업보건에 관한 새로운 이슈나 정책방향, 지식·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발표 및 토론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학습조직 :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의 교류와 공동학습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어야 함 ☐ 판단기준 ○ (참여율 인정조건) - 전체 지도요원(법정 및 추가인력)의 50% 이상 참여 시 인정 ※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시점을 기준으로 참여율 파악 ※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계획과 결과 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운영 실적으로 불인정 ※ 지도사 기관은 평가 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증빙서류	○ 세미나, 학습조직 운영 서류	

A.2.2	지도요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120)	
평가항목 A.2.2.6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각종 학술대회 등 참여 실적	① 모든 지도요원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100%)	☐ 30
	② 지도요원의 80%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	☐ 25
	③ 지도요원의 60%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	☐ 20
	④ 지도요원의 40%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	☐ 15
	⑤ 지도요원의 20%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	☐ 10
	⑥ 지도요원의 20% 미만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	☐ 5
평 가 취 지	○ 산업보건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정책 방향 등의 정보·지식 습득을 위한 산업보건관련 학술대회 참여 노력도를 평가하여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내 소속지도요원의 산업보건관련 각종 학술대회에 참여 실적을 평가 ☐ 평가대상 ○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을 유지한 법정 및 추가인력(이직자, 퇴직자 포함) ☐ 평가산식 – 참석률(%) = (연평균 학술대회 참여자수 ÷ 법정 및 추가 인력수) *100 ☐ 판단기준 ○ 인정 가능한 학술대회 –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대한인간공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산업보건관련 국내 학술대회 – ICOH, AIHCe, 한중일학술집담회 등 산업보건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 안전보건공단 주관 산업보건 관련대회 –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과정 – 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의사 연수교육’ 과정 등 ※ 의사협회 주관 ‘의사 연수교육’ 과정의 경우, 법정 직무교육으로 참여시 평가제외 ○ 수료증이나 참가확인증이 없는 경우는 실적 미인정(단순 학회 참가자 제외) ※ 단순 학회 연회비 등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 가급적 자기 자격, 면허분야 학술대회 참석을 권장함 ○ (A.2.2.5)항목의 자체적으로 시행한 세미나는 동 평가 대상에서 제외	
증빙서류		
	○ 수료증, 확인증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관리)

A.3.1	장비의 유지, 관리 적정성 (배점: 40)	
평가항목 A.3.1.1	평가기준 (배점: 20, 감점: -5)	평가결과
장비관리지침 및 검·교정 여부	① 모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고 자체 지침에 따라 검·교정이 적정한 주기에 실시된 경우	☐ 20
	② 장비관리 지침을 보유하지 않거나 일부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 장비관리 지침 자체 주기에 따라 검·교정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 10
	③ 장비관리 지침을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 장비관리 지침의 자체 주기에 따른 검·교정 실적이 없는 경우	☐ 0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 가 취 지	○ 보유 장비의 정확도와 정밀도 유지·향상 등 장비의 성능 유지·관리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탁업무 수행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장비관리(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유 장비의 검·교정을 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유해요인 및 국소배기장치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유 장비의 성능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 평가대상 ○ 장비관리지침 : 보유한 모든 장비를 포함되어야 함 ○ 검교정 대상장비(9종) : 유량계(공기시료채취기 보정기), 표준소음발생기(주파수분석용 소음측정기 보정용), 소음측정기, 조도계,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절연저항계,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WBGT(습구흑구 온·습도계) ☐ 판단기준 ○ 장비관리(운용)지침 : 모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 마련 유무 평가 ○ 검·교정 : 주기설정 적정성 및 누락여부 확인 ※ 검·교정 주기는 장비관리(운용)지침에 따르되, 최대 3년(36개월)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 장비관리(운용)지침이 없는 경우, 검·교정 주기는 3년(36개월)으로 적용 ※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는 매뉴얼 상의 센서 교체주기를 기준으로 함	
증빙서류	○ 장비운영(관리)지침, 보유 장비 현황, 검·교정 실적 등	

A.3.1	장비의 유지, 관리 적정성 (배점: 40)					
평가항목 A.3.1.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장비사용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①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개 모두 보유 장비의 기록관리가 100% 이뤄지는 경우	☐ 20				
	②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개 모두 보유 장비의 80% 이상에 대해 기록관리가 이뤄지는 경우	☐ 16				
	③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 장비의 80% 미만에 대해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 12				
	④ 장비이력카드 또는 사용 대장 중 1개만을 보유하고 해당 부분만 기록 관리하는 경우	☐ 8				
	⑤ 장비이력카드 또는 사용 대장 중 1개만을 보유하고 기록 관리가 없는 경우	☐ 4				
	⑥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이 없음	☐ 0				
평 가 취 지						
○ 보유 장비의 이력카드, 사용 대장을 마련하고 기록 관리를 통한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탁업무 수행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보유 장비의 장비이력카드 및 장비사용대장에 대한 보유 여부 및 각각의 기록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평가						
☐ 평가대상 : 아래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대장						
<table border="1"> <thead> <tr> <th>작업환경 관리장비(6종)</th> <th>건강관리 장비(2종)</th> </tr> </thead> <tbody> <tr> <td> ·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 온열조건 측정기(WBGT) 및 조도계 · 직독식 유해가스농도 측정기(산소 포함) · 국소배기시설 성능 시험장비 :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td> <td> ·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 혈압계 </td> </tr> </tbody> </table>			작업환경 관리장비(6종)	건강관리 장비(2종)	·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 온열조건 측정기(WBGT) 및 조도계 · 직독식 유해가스농도 측정기(산소 포함) · 국소배기시설 성능 시험장비 :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 혈압계
작업환경 관리장비(6종)	건강관리 장비(2종)					
·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 온열조건 측정기(WBGT) 및 조도계 · 직독식 유해가스농도 측정기(산소 포함) · 국소배기시설 성능 시험장비 :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 혈압계					
☐ 판단기준 ○ 기록관리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가 충실히 이뤄지는지 여부 평가 - 장비이력카드: 장비의 용도, 수리 및 점검일자, 검·교정 및 수리내역 등 - 장비사용대장: 장비 반출 및 반입 내역, 장비 보정내역 등						
증빙서류						
○ 장비이력카드, 장비사용대장 등						

A.3.2	장비활용 실적 (배점: 30)																										
평가항목 A.3.2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장비활용 실적	분야별(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장비에 대해 사업장 당 활용실적 산정 후 아래 표에서 점수부여	점 * 아래 표에서 최종 점수 산정																									
평 가 취 지																											
○ 수탁업무 수행 시 장비활용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사업장의 이해도를 증진 시키고 현장의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동안 수탁사업장 보건관리 시 작업환경관리장비(개인용시료채취기, 검지관, 소음측정기, 온열측정기, 조도계, 직독식 유해가스측정기,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및 건강관리 장비(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혈압계) 활용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 : 2개 분야별 아래 선정기준으로 각각 5개소 무작위 대상 선정 ○ 작업환경관리장비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건강관리장비 : 장년근로자 다수 보유사업장, 요관찰자(C)/유소견자(D) 등 기초질환자 보유사업장, 뇌심혈관질환 발병사업장 ※ 단, 수탁사업장 수가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 ☐ 평가산식 ○ 분야별 장비활용 실적을 산출한 후 아래 <표>를 이용한 조합평가 - 작업환경관리장비 평균 활용 실적(회) $= \frac{\text{선정된사업장 작업환경관리장비 활용한 방문횟수}}{5(\text{선정된사업장수})}$ - 건강관리장비 평균 활용 실적(회) $= \frac{\text{선정된사업장 건강관리장비 활용한 방문횟수}}{5(\text{선정된사업장수})}$ 【분야별 장비활용 실적 조합표】 <table border="1"> <tr> <td></td> <td>작업환경관리장비</td> <td>6회 미만</td> <td>6회 이상</td> <td>8회 이상</td> </tr> <tr> <td>건강관리장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회 미만</td> <td></td> <td>5</td> <td>10</td> <td>15</td> </tr> <tr> <td>15회 이상</td> <td></td> <td>10</td> <td>20</td> <td>25</td> </tr> <tr> <td>20회 이상</td> <td></td> <td>15</td> <td>25</td> <td>30</td> </tr> </table> ☐ 판단기준 ○ 장비활용 실적은 장비사용대장, 상태보고서 등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 평가 사업장의 법정 방문회수(회) 산정 시 의사는 제외				작업환경관리장비	6회 미만	6회 이상	8회 이상	건강관리장비					15회 미만		5	10	15	15회 이상		10	20	25	20회 이상		15	25	30
	작업환경관리장비	6회 미만	6회 이상	8회 이상																							
건강관리장비																											
15회 미만		5	10	15																							
15회 이상		10	20	25																							
20회 이상		15	25	30																							
증빙서류																											
○ 상태보고서, 보유장비 현황 등																											

A.3.3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배점: 10)							
평가항목 A.3.3	평가기준 (배점: 10)	평가결과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① 장비사용 및 보정수행 방법 모두(100%) 숙지	☐ 10						
	② 장비사용 및 보정수행 방법 일부(50% 이상) 숙지	☐ 5						
	③ 장비사용 및 보정수행 방법 일부(50% 미만) 숙지 미흡	☐ 0						
평 가 취 지								
○ 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요원(의사, 간호사,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의 이해도를 확인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탁업무 수행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의 법정장비[작업환경관리장비(6종), 건강관리장비(2종)]에 대한 사용법 및 보정법에 대한 숙지상태를 면담평가								
☐ 평가대상 선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구분</th> <th>평가대상 장비 선정기준 및 면담평가 선정방식</th> </tr> <tr> <td>대상장비</td> <td> * 작업환경관리장비(6종) 및 건강관리장비(2종)에 대해 각각 2종 선정 - (작업환경관리장비) 6종 중 평가자가 2종을 임의 선정하되, 1종은 <u>정량 보정이 필요한 장비</u>(개인용 시료채취기, 소음측정기) 중에서 반드시 선정 - (건강관리장비)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혈압계 </td> </tr> <tr> <td>대상인력</td> <td> 법정인력 중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 1명과 의사 또는 간호사 중 1명 임의 선정 ※ 지도사 기관(위촉된 의사만 있는 경우)은 지도사 1명만 선정 </td> </tr> </table>			구분	평가대상 장비 선정기준 및 면담평가 선정방식	대상장비	* 작업환경관리장비(6종) 및 건강관리장비(2종)에 대해 각각 2종 선정 - (작업환경관리장비) 6종 중 평가자가 2종을 임의 선정하되, 1종은 <u>정량 보정이 필요한 장비</u> (개인용 시료채취기, 소음측정기) 중에서 반드시 선정 - (건강관리장비)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혈압계	대상인력	법정인력 중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 1명과 의사 또는 간호사 중 1명 임의 선정 ※ 지도사 기관(위촉된 의사만 있는 경우)은 지도사 1명만 선정
구분	평가대상 장비 선정기준 및 면담평가 선정방식							
대상장비	* 작업환경관리장비(6종) 및 건강관리장비(2종)에 대해 각각 2종 선정 - (작업환경관리장비) 6종 중 평가자가 2종을 임의 선정하되, 1종은 <u>정량 보정이 필요한 장비</u> (개인용 시료채취기, 소음측정기) 중에서 반드시 선정 - (건강관리장비)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혈압계							
대상인력	법정인력 중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 1명과 의사 또는 간호사 중 1명 임의 선정 ※ 지도사 기관(위촉된 의사만 있는 경우)은 지도사 1명만 선정							
☐ 평가항목 ○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 1명) 작업환경관리장비를 대상으로 총 3문항 평가 · 장비 사용법 : 선정된 장비 2종의 사용법에 대한 면담 평가(총 2문항) · 장비 보정법 : 정량 보정이 필요한 필수 선정 장비의 보정법 면담 평가(총 1문항) ○ (의사, 간호사 중 1명) 건강관리장비를 대상으로 총 2문항 평가 · 장비 사용법: 선정된 장비 2종의 사용법에 대한 면담 평가(총 2문항)								
☐ 판단기준 ○ 장비별 사용법 및 보정법은 보유 장비의 매뉴얼에 따름 ○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은 3개 문항, 의사 또는 간호사는 2개 문항을 평가하여 총 5개 문항 중 숙지상태가 양호한 문항수의 비율 산출								
☐ 평가산식 ○ $\text{숙지율}(\%) = (\text{적정 답변수} \div \text{질문수}) * 100$								
※ (예시) - (산업위생분야) 2종류 장비사용법은 모두 알고 있으나, 1종의 보정방법을 모를 경우⇒ (숙지율) 2회/3회 - (의사, 간호사 중 1명) 2종류 장비사용법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 (숙지율) 2회/2회 ☞ (종합평가) 피평가자 2명의 통합 숙지율 산출 : (4회/5회)*100=80%로 5점 평가								
증빙서류								
○ 평가자 현장 면접 결과								

A.4 사업장 관리

A.4.1	업무 표준의 수립 (배점: 20, 가점: +10, 감점: -10)	
평가항목 A.4.1.1	평가기준 (배점: 20, 감점: -5)	평가결과
자체 업무매뉴얼의 보유 및 활용 여부	①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한 분야별 업무 매뉴얼이 적정하고 정기적인 현행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도요원 교육·훈련·열람 등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	☐ 20
	②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한 분야별 업무 매뉴얼이 미흡하거나, 정기적인 현행화 등 일부 구성 내용이 미흡 또는 지도요원 교육·훈련·열람 등 활용이 미흡한 경우	☐ 10
	③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0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 가 취 지	○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내용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현행화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수행 요원들이 숙지토록 하는 등 수탁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 효과를 거양하고자 함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사업장 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적절한 내용으로 문서화하여 상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업무 수행요원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 판단기준 ○ 업무매뉴얼은 분야별 지도요원(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보건 관리자, 산업보건, 지도사의 업무 및 직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보호구 착용지도, 순회점검 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근로자 보건교육, 작업환경개선지도 등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매뉴얼이 정기적으로 현행화 되고 있어야 함 ○ 업무 매뉴얼에 대한 지도요원(신규자 포함) 교육·훈련·열람 등 업무수행 시 지도요원들의 활용도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	
증빙서류		
○ 지도요원 분야별(의사/간호사/산업위생분야) 업무매뉴얼		

A.4.1	업무 표준의 수립 (배점: 20점, 가점: +10점, 감점: -10점)									
평가항목 A.4.1.2	평가기준 (가점: +10, 감점: -10)	평가결과								
K2B 전산 관리의 적정성	① K2B 입력오류가 없는 경우	☐ 0								
	② K2B 입력오류 비율이 3% 미만인 경우	☐ -2								
	③ K2B 입력오류 비율이 3% 이상 ~ 10% 미만인 경우	☐ -5								
	④ K2B 입력오류 비율이 10% 이상 또는 K2B 미가입	☐ -10								
자체 평가보고서 등록 여부	① 기한 내 자체 평가보고서 등록한 경우	☐ +5								
	②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 또는 미작성·미등록한 경우	☐ 0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여부	① 평가보고서 작성의 내용이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한 경우	☐ +5								
	② 평가보고서 작성의 내용이 일부라도 누락된 경우	☐ 0								
평 가 취 지										
○ K2B 전산 관리 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신뢰도 향상 유도 ○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의 이의제기 감소 및 자체 수준 향상 노력도 제고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 방법 ○ K2B 입력 결과를 집계하여 자연 누락 오류 건수를 산출하여 평가 ○ 평가대상기간 전체 위탁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 ○ K2B 전산에 기관의 자체 평가보고서 등록기한 준수 및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산식 입력오류 비율 = $\frac{\text{상태보고서 입력 오류 건수}}{\text{평가년도 상태보고서 입력 실적}} \times 100$ ☐ 판단 기준 <table><tr><td>입력 오류 산출 기준</td></tr><tr><td>① 입력 오류 건수</td></tr><tr><td>- 임의 사업장 입력 사업장(입력된 상태보고서 수)</td></tr><tr><td>※공단 산재통계 조회 시 확인</td></tr><tr><td>- 상태보고서 입력 자연 사업장</td></tr><tr><td>- 상태보고서 미첨부 건수</td></tr><tr><td>② 위탁사업장 입력을 누락한 경우는 “0”점으로 평가</td></tr><tr><td>③ 위탁사업장 정보가 최신화 되지 않은 경우(위탁사업장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td></tr></table> ※ K2B 전산입력 자연여부 확인(매월 상태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K2B에 등록 준수 확인) ○ 자체 평가보고서 등록 및 작성의 적정성은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후 제출기한 내 K2B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공고된 양식에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만 기재한 경우 불인정)			입력 오류 산출 기준	① 입력 오류 건수	- 임의 사업장 입력 사업장(입력된 상태보고서 수)	※공단 산재통계 조회 시 확인	- 상태보고서 입력 자연 사업장	- 상태보고서 미첨부 건수	② 위탁사업장 입력을 누락한 경우는 “0”점으로 평가	③ 위탁사업장 정보가 최신화 되지 않은 경우(위탁사업장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입력 오류 산출 기준										
① 입력 오류 건수										
- 임의 사업장 입력 사업장(입력된 상태보고서 수)										
※공단 산재통계 조회 시 확인										
- 상태보고서 입력 자연 사업장										
- 상태보고서 미첨부 건수										
② 위탁사업장 입력을 누락한 경우는 “0”점으로 평가										
③ 위탁사업장 정보가 최신화 되지 않은 경우(위탁사업장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증빙서류										
○ 기술지도 사업장 K2B 입력자료 등										

A.4.2	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관리 (배점: 40)	
평가항목 A.4.2	평가기준 (배점: 40)	평가결과
사업장 관리카드 적정성	① 사업장관리카드의 내용이 누락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 10
	② 누락률이 20% 이하인 경우	☐ 5
	③ 누락률이 20% 초과인 경우	☐ 0
상태보고서 적정성	①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100%인 경우	☐ 30
	②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90% 이상인 경우	☐ 25
	③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80% 이상인 경우	☐ 15
	④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60% 이상인 경우	☐ 5
	⑤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60% 미만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사업장 관리카드의 작성 및 보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수탁사업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유도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보건관리 상태보고서를 적기에 제공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 교체에 따른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평가년도 수탁사업장의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작성 및 내용 누락 여부 확인(필요시 사업장 방문, 팩스 등을 통한 확인) ※ 수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확인하여 평가 [사업장관리카드 적정성] ☐ 평가산식 ○ $\text{내용 누락률(\%)} = (\text{관리카드 내용이 누락된 사업장수} \div \text{선정된 사업장수}) \times 100$ ☐ 판단기준 ○ 사업장 관리카드가 없는 수탁사업장이 1개소 이상 있는 경우 “0점” 평가 ○ 사업장 관리카드 내용 중 1개 이상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으로 판단 ※ 사업장 관리카드 내용 중 안전관련 부분(안전보호구,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무재해 운동 추진 등)에 대한 서식 또는 내용의 기재 생략 가능 ○ 산재관리번호 작성 오류로 산업재해 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관리카드 내용 누락사업장으로 판단 ○ 사업장 관리카드와 상태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한 단계 하향 [상태보고서 적정성] ☐ 평가산식 ○ $\text{적정비율(\%)} = (\text{적정 상태보고서수 합계} \div \text{평가대상기간 법정 방문횟수 합계}) \times 100$ ☐ 판단기준 ○ 상태보고서가 당일 현장에서 전달되는 체계가 아닌 기관은 “문서화”로 평가하며, 팩스 등으로 회신 받아 기관 보관용과 불일치할 경우 “0점” 평가 ○ 적정 비율 평가: 상태보고서상 방문일자 및 서명 여부, 사업장담당자 서명 여부, 사업장의 보고서에 대한 결재 유무 등의 적합 여부로 평가 - 프로그램(App) 등을 통한 상태보고서 작성도 인정	
증빙서류	○ 수탁사업장 현황, 사업장 관리카드,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등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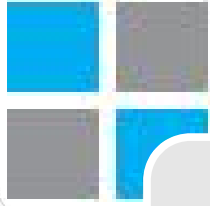
A.5.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가점: 최대 +10점)	
평가항목 A.5.1	평가기준 (가점: 최대 +10점)	평가결과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① 대통령상: _____ 건 × 5 점 = _____ 점 ② 국무총리상: _____ 건 × 4 점 = _____ 점 ③ 고용노동부장관상: _____ 건 × 3 점 = _____ 점 ④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_____ 건 × 2 점 = _____ 점 ⑤ 지자체장상 등: _____ 건 × _____ 점 = 1 점 ⇒ 총점: ①+②+③+④+⑤ = _____ 점(최대 +10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 분야 유공 기관 및 소속 지도요원의 포상실적 발굴을 통한 사기 진작 및 대외 공신력 확보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기간 내 평가 기관 또는 소속직원이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을 관련 상장 또는 상패 등으로 확인하여 실적 평가 * 지자체단체장 등은 지자체장(시,도), 고용부 지방관서장, 공단 일선기관장과 민간단체인 보건관련 학회 및 협회장으로 한정함 - 평가기간 내 근무하는 동안 포상한 실적에 한함(보유인력 중 포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포상을 받을 당시 소속기관에 한하여만 실적 인정)	
증빙서류	○ 포상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공문, 상패, 표창장 사본 등)	

A.5.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최대 -80)	
평가항목 A.5.2	평가기준 (감점: 최대 - 80점)	평가결과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업무정지 처분 ____개월 × (-15)점 = ____점 ⇒ 총점: ____점(최대 -80점)	____ 점
평 가 취 지	○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감점 평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대상기간 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 평가 ○ 업무정지 처분 개월 수 당 15점 감점, 최대 80점 감점 - 처분 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 ※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예시) 업무정지 3.5개월 × -15점 = - 52.5점 → 53점	
증빙서류		
○ 처분 관련 공문		

A.5.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최대 -20점)	
평가항목 A.5.3	평가기준 (감점: 최대 - 20점)	평가결과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시정조치·경고 처분 _____건 × (- 2)점 = _____점 ⇒ 총점: _____점(최대 -20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시정조치·경고 처분에 대한 감점 평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대상기간 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시정 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 평가 ○ 시정조치·경고 처분 건수 당 2점 감점, 최대 -20점 감점	
증빙서류	○ 시정 조치 관련 공문	

A.6 종합화

A.6.1	종합기술지원 (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가점: 최대 +10점)	
평가항목 A.6.1	평가기준 (가점: 최대 +10점)	평가결과
종합기술지원 (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협약 기관간 교류실적 : _____ 건 × 1점 = _____ 점 ⇒ 총점: _____ 점(최대 10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수탁 사업장 업무상질병 예방 활동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기관의 제한된 기술력 극복 등 상호보완 노력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를 조언·지도하는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극대화를 위해 관련분야 컨소시엄 구성 등 상호 교류실적 평가 ☐ 평가대상 및 판단근거 ○ 평가대상기간 내 컨소시엄(협약) 체결기관과의 교류실적 건수 반영 – 컨소시엄(협약)기관 간 교류실적은 구두 교류가 아닌 상호 업무 협조를 증명하는 공문이나 협약서 작성 후 시행하며 시행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사진,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 – 단, <u>동일사업자¹⁾</u> 인 기관과 연계할 경우 평가점수의 1/2(50%) 반영 ¹⁾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 사업장개시번호가 다른 사업장으로 인정, 사업장 당 최대 1점 ※ 예시1) 수탁 사업장내 취급화학물질 변동시 작업환경측정기관 연계, 건강이상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연계 등 컨소시엄 기관 간 교류실적 반영 ※ 예시2) 환기장치의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환기설비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협약 등) 구성 및 활동실적 반영 ※ 예시3) 근로자 건강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실적 반영 ※ 예시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개선, 작업특성을 고려한 신체 부위별 스트레칭 제시, 개인별 운동처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실적 반영 ※ 예시5)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수준 초과(50%이상 포함)공정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실적 반영 등	
증빙서류	○ 관련 근거 문서(공문, 협약서, 결과보고서 등)	



B. 업무성과

B.1 기술지도의 충실성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평가항목 B.1.1.1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요양 후 업무복귀 시의 업무적합성평가	① 업무적합성평가를 80% 이상 수행한 경우	☐ 30
	② 업무적합성평가를 60% 이상 수행한 경우	☐ 20
	③ 업무적합성평가를 40% 이상 수행한 경우	☐ 10
	④ 업무적합성평가를 40% 미만 수행한 경우	☐ 5
평 가 취 지	○ 산업보건과의 직무 중 업무적합성평가 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체계적인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 후 업무복귀 시 의사의 업무적합성 평가 여부 확인 ☐ 평가대상 ○ 산업재해로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5개소 이상 선정 ※ 단,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 대상이 없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 선정된 사업장당 업무적합성 평가 대상자를 최소 1인(최대 5인)이상 선정 ※ 총 대상자수 : 최소 5명, 최대 25명 ☐ 평가산식 ○ 실시율(%) = (업무적합성평가 실시 건수 ÷ 업무적합성평가 대상자) × 100 ☐ 판단기준 ○ 선정된 근로자 대비 업무적합성 평가 수행한 건수 파악 (업무적합성 평가 건수가 다수인 근로자도 1건의 평가로 인정)	
증빙서류	○ 업무적합성평가서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평가항목 B.1.1.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	①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를 80% 이상 실시한 경우	☐ 20
	②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를 60% 이상 실시한 경우	☐ 15
	③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를 40% 이상 실시한 경우	☐ 10
	④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를 40% 미만 실시한 경우	☐ 5
평 가 취 지		
○ 의사 및 간호사의 직무 중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여부를 평가하여 체계적인 유소견자, 요관찰자 관리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수탁사업장의 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 질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에 대한 작업배치,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상담 및 영양지도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실시 여부 평가 ☐ 평가대상 ○ 건강진단(일반 및 특수)결과 유소견자(D), 요관찰자(C) 발생사업장 등 5개소 이상 선정 - 단,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업무적합성평가) 결과 “다”, “라”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포함된 사업장 우선 선정 ※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 대상이 없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 선정된 사업장당 사후관리 대상자를 최소 1인 이상 선정. ※ 총 대상자수 : 최소 5명 이상 ☐ 평가산식 ○ 실시율(%) = (사후관리를 실시한 근로자 수 ÷ 대상 근로자 수) × 100 ☐ 판단기준 ○ 대상 근로자수 중에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건수 파악 ※ 1명의 근로자가 다수의 사후관리를 받은 경우, 1회로 봄		
증빙서류		
○ 사업장 관리카드, 상태보고서, 상담일지, 진료의뢰서 등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평가항목 B.1.1.3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의사)	①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실시 및 실질적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 30
	②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실시	☐ 20
	③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일부 누락	☐ 10
	④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누락	☐ 0
평 가 취 지	○ 산업보건과의 직무 중 근로자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실시 여부를 평가하여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업무상질병 판정자에 대한 질병발생 원인 조사(작업환경, 근무방법 등)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지도 및 실시 여부를 평가 ☐ 평가대상 ○ 평가대상기간 내 업무상질병자 발생, 질병 유소견자(D1, DN)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단, 소음성난청, 진폐, 일반질병 유소견자(D2)는 제외) – 야간작업 유소견자(DN)는 위장관계, 내분비계, 신경계 유소견자 보유사업장 우선 선정 –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하되 5개소 미만일 경우 전수 평가 ※ 대상사업장이 없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 판단기준 ○ 실질적인 사후조치 : 평가기간 내 의학적 조치 지도에 대한 사후조치 실시한 것이 입증되어야 함	
증 병 서 류	○ 사업장 관리카드, 상태보고서, 건강상담일지, 진료의뢰서(해당시), 업무적합성평가서(해당시) 등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평가항목 B.1.1.4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지도요원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여율	① 위원회 참석을 80% 이상 수행한 경우	☐ 20
	② 위원회 참석을 60% 이상 수행한 경우	☐ 16
	③ 위원회 참석을 40% 이상 수행한 경우	☐ 12
	④ 위원회 참석을 20% 이상 수행한 경우	☐ 8
	⑤ 위원회 참석을 20% 미만 수행한 경우	☐ 4
	⑥ 위원회 참석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0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지도요원의 참석률 평가를 통한 예방활동의 현장 작동성 강화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분기마다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여 수탁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활동 참여 여부를 평가 ☐ 평가대상 ○ 수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하되, 의사가 산안위에 참석한 사업장을 반드시 1개소 이상 포함하여 선정 ※ 대상 사업장이 5개소 미만일 경우 전수 평가 ※ 의사의 산안위 참석 사업장이 없는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한 단계 하향 평가 ☐ 평가산식 ○ 참여율(%) = (지도요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사업장 수 ÷ 선정된 사업장 수) × 100 ☐ 판단기준 ○ 동일한 사업장에 1회 이상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참석한 것으로 인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서명 등 확인), 사업장관리카드, 상태보고서 등으로 지도요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을 증빙할 때 인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직접 참여가 아닌 위임장 전달 및 의견개진 등은 불인정	
증 빙 서 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사업장관리카드, 상태보고서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평가항목 B.1.1.5	평가기준 (배점: 10)	평가결과
보호구 착용 지도	① 보호구 착용 지도 및 실질적인 조치가 누락 없이 모두 실시된 경우	☐ 10
	② 보호구 착용 지도가 100%인 경우	☐ 8
	③ 보호구 착용 지도가 80% 이상인 경우	☐ 5
	④ 보호구 착용 지도가 80% 미만인 경우	☐ 3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의거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실시 여부 평가를 통한 사업장의 업무상질병 예방효과 거양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보호구 선정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지도 및 보호구의 착용방법 등(밀착도검사 방법 등)에 관한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 평가대상 ○ 화학물질 취급, 소음 및 분진작업 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 ※ 5개소 미만은 전수 평가 ☐ 판단기준 ○ 보호구 착용 지도 : 사업장 공정, 취급 화학물질 현황 등 파악 후 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및 보호구 착용 지도 여부를 평가 –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등에 ‘보호구 착용 지도’로 단순히 기록된 내용은 불인정 ○ 실질적인 조치 : 밀착도 검사 등 보호구 착용 교육, 적격품 선정방법 교육 등을 평가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실질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업장 적격품 구매 관련 서류가 확인된 경우에 인정 – 교육 실시는 교육 실시일지(교육대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등), 작업 중 실제 착용한 사진 첨부 등이 확인되어야 함	
증빙서류	○ 사업장관리카드, 보건관리상태보고서, 교육 실시일지, 보호구 적격품 구매 관련 서류(사업장) 등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평가항목 B.1.1.6	평가기준 (배점: 40)	평가결과
작업환경 개선지도	① 선정사업장 모두 개선의견 제시 및 실질적 개선이 이행된 경우	☐ 40
	② 선정사업장의 80% 이상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	☐ 30
	③ 선정사업장의 60% 이상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	☐ 20
	④ 선정사업장의 40% 이상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	☐ 10
	⑤ 선정사업장의 40%미만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	☐ 5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의거 수탁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유도하여 업무상질병 예방효과 거양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개선의견이 적절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행 되었는지를 평가		
☐ 평가대상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개소 이상 임의 선정(단,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 - 노출기준 초과(50% 이상 포함) 사업장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판단기준 ○ 의견제시 내용 : 환기장치 성능 및 개선방안, 작업수칙, 사고시 대피요령, 명칭게시, 취급 일지 작성 및 고지(특별관리물질에 국한), 화학물질의 저장 및 빈용기 관리, 청소, 출입 금지, 흡연·음식물 섭취금지 등 ○ <u>실질적 개선이행</u> ¹⁾ 은 평가기간 내 의견 제시 후 최소 1회 이상 실적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이 입증되어야 함 ¹⁾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검진결과, 안전검사결과에서 입증되어야 하며, 환기설비는 설비개선 사진(또는 관련서류) 등 증빙되어야 함 ※ 예시1)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환기설비 개선의견 ※ 예시2) 노출기준 50% 초과 사업장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실시의견(단,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국한) ※ 예시3) 시행규칙 제190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횟수 단축의견(해당시) ※ 예시4)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한 특수검진 주기단축 의견(해당시)		
증빙서류		
○ 보건관리상태보고서, 증빙서류, 개선지도 결과서 등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평가항목 B.1.1.7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① 순회점검 실시율이 80% 이상인 경우	☐ 20
	② 순회점검 실시율이 60% 이상인 경우	☐ 16
	③ 순회점검 실시율이 40% 이상인 경우	☐ 12
	④ 순회점검 실시율이 20% 이상인 경우	☐ 8
	⑤ 순회점검 실시율이 20% 미만인 경우	☐ 4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9호에 의거 수탁 사업장의 보건문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는 등 작업장 순회점검 수행 수준을 평가하여 현장에 최적화된 개선활동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제조업 및 비제조업에 대한 작업환경 순회점검 활동 실시율을 평가 ☐ 평가대상 ○ 수탁 사업장 중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업장을 각각 2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하여 총 5개소 이상 선정 ※ 어느 한 분야가 2개소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분야에서 추가 선정(총 5개소 이상) ☐ 평가산식 ○ 실시율(%) = (사업장별 순회점검 실시회수 합 ÷ 사업장별 방문회수 합) × 100 ☐ 판단기준 ○ 순회점검 내용이 상태보고서 또는 순회점검표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 인정 ※ 순회점검 내용 : 작업장 정리정돈상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상태, MSDS 게시와 비치,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작업장 환기상태, 국소배기장치 운영상태, 밀폐공간 작업상태,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작업장 상태 및 사무실, 복도 및 계단, 화장실, 락카실, 샤워실, 휴게실 및 식당 등 작업장 이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상태 ※ 순회점검표 등 작성 시 점검자 서명 등 확인되는 경우 실시 인정	
증빙서류	○ 보건관리상태보고서, 작업장 순회점검표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평가항목 B1.1.8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조언·지도	계획 수립률	① 보건교육계획서를 80%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 10
		② 보건교육계획서를 60%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 8
		③ 보건교육계획서를 40%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 6
		④ 보건교육계획서를 20%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 4
		⑤ 보건교육계획서를 20% 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 2
		⑥ 보건교육계획서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 0
	교육 실시율	① 보건교육을 80% 이상 실시한 경우	☐ 10
		② 보건교육을 60% 이상 실시한 경우	☐ 8
		③ 보건교육을 40% 이상 실시한 경우	☐ 6
		④ 보건교육을 20% 이상 실시한 경우	☐ 4
		⑤ 보건교육을 20% 미만 실시한 경우	☐ 2
		⑥ 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 0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의한 산업보건교육 직접 수행을 통한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인식 제고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임의로 5개소 이상 수탁사업장을 선정하여 보건교육계획 수립률과 보건교육 실시율을 각각 평가하여 이를 합산 [보건교육계획 수립률] ☐ 평가산식 ○ $\text{수립률}(\%) = (\text{교육계획서 보관 사업장수} \div \text{선정사업장 수}) \times 100$ ☐ 판단기준 ○ 각 요원의 상태보고서 중 보건교육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도·조언한 사실이 있고, 산업(안전)보건교육계획서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태보고서에 지도·조언한 사실만 있고, 교육계획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2점” 지도·조언한 사실이 없이 교육계획서만 확보하고 있는 경우 “0점” 으로 평가 ※ 계획서 포함 내용(교육종류 및 대상, 교육과정, 근로자 현황 등)이 미흡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보건교육 실시율] ☐ 평가산식 ○ $\text{실시율}(\%) = (\text{교육실시 사업장 수} \div \text{선정사업장 수}) \times 100$ ☐ 판단기준 ○ 지도요원이 평가기간 중 수탁사업장 대상으로 “1시간(2회)” 교육실시 여부를 평가 - 평가대상기간 중 총 2회 실시 여부 평가 - 교육시간은 휴게시간 10분을 포함한 1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여 “1회”로 계산 - 동일사업장에 2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더라도 “1회”로 계산 - 교육시간이 50분 미만인 경우에는 참석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 이상이면 “1회”로 계산 - 전체 근로자 중 80% 이상 참여시 “1회”로 인정 ○ 교대작업 실시 사업장의 경우 교육 인원수를 합산하여 할 수 있음 ○ 교육시간이 표시되지 않은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증빙서류			
○ 상태보고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계획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혹은 보고서)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평가항목 B.1.2.1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물질별 MSDS 관리,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모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해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 MSDS 관리,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지도하고, 그 중 80% 이상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30
	② 모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해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 MSDS 관리,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지도한 경우	☐ 20
	③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 MSDS 관리,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평가대상사업장의 80% 이상 지도한 경우	☐ 10
	④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 MSDS 관리,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평가대상사업장의 80% 미만 지도한 경우	☐ 5
평 가 취 지		
○ 공정별로 취급하는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적정 MSDS관리, 게시, 경고표시 부착 등을 지도하고 교육을 통하여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 인지도 향상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해당물질 취급공정에 MSDS 게시·비치 및 소분용기 등 취급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등 사업장 내 MSDS 제도 이행에 대한 지도내용의 적정성 평가		
☐ 평가대상		
○ 화학물질 사용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		
☐ 판단기준		
○ 공정별로 취급 화학물질 파악, 화학물질별 적정 MSDS를 확보토록 지도 및 신뢰성(구성, 내용, 항목 등) 검토, 취급근로자 교육 실시 등 지도내용, MSDS 게시 및 경고표시의 부착 등의 적정성 확인		
- 평가기준 ①의 “실질적 조치”란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이나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대한 누락확인이나 대체물질의 사용권고, MSDS에 대한 신뢰성 및 적정MSDS 확보, 소분용기 등 취급용기에 적정한 경고표시 부착 관리, 취급근로자 교육 등에 대한 지도 후 사업장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진 경우로 상태보고서, 작업장 순회점검표 또는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		
증빙서류		
○ 사업장관리카드,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순회점검표, MSDS(해당시)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평가항목 B.1.2.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모두 적정하고 그 중 80%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	☐ 20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률이 80% 이상인 경우	☐ 15
	③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률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률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가취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활동의 실행력 제고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지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무리한 힘·부자연스런자세·반복동작의 감소방법 제시 등 지도의 적정성 및 실제 이행을 평가 ☐ 평가대상 ○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또는 근골격계질환 위험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 평가(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 –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사업장인 경우 우선 선정 ※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선정이 어려울 경우 근골격계질환 고위험업종¹⁾으로 선정 ¹⁾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평가산식 ○ 적정률(%) = (적정 사업장수 ÷ 선정 사업장수) × 100 ☐ 판단기준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바른자세, 스트레칭, 체조, 반복동작 감소방법 제시 등 지도내용이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 평가기준 ①의 “실제 실시한 경우”란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작업장 순회점검표 또는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	
증빙서류	○ 보건관리상태보고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 순회점검표, 기타 증빙서류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평가항목 B.1.2.3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근로자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①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에 누락이 없고 그 중 80%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	☐ 20
	②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15
	③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실적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체계적인 건강증진운동 지도를 통한 사내 근로자 건강 보호·증진 활동 활성화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금연, 절주, 비만, 영양, 운동관리 등 근로자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내용의 적정성 평가 ☐ 평가대상 ○ 수탁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 평가 ☐ 평가산식 ○ 실시율(%) = (적정 사업장수 ÷ 선정 사업장수) × 100 ☐ 판단기준 ○ 근로자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금연지도, 비만지도, 영양지도, 운동지도, 혈압 및 혈당관리 등) 지도 내용의 적정성 확인 – 평가기준 ①의 “실제 실시한 경우”란 근로자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추진팀, 추진절차, 시행 및 평가 등) 후 실제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문서화된 형태(계획 수립, 결과 문서 등)*로 확인되어야 함 * KOSHA-Guide H-162-2014(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를 활용하여 작성	
증빙서류	○ 보건관리상태보고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 관련 서류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평가항목 B.1.2.4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①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에 누락이 없고 그 중 80%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	☐ 30
	②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20
	③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실적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를 통한 예방효과 거양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및 심리상담 등 조치 내용의 적정성 평가		
☐ 평가대상 ○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전업 차량운전, 정밀기계 조작 작업, 감정노동 종사 직종 보유 사업장 등)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		
☐ 평가산식 ○ 실시율(%) = (적정 사업장수 ÷ 선정 사업장수) × 100		
☐ 판단기준 ○ 직무스트레스요인 평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작업전환, 휴식시간 배분, 상담치료, 건강 증진프로그램 시행 등 지도내용의 적정성 확인 ※ 직무스트레스 평가 지도는 KOSS(한국인직무스트레스평가도구), 사회심리적지수, 감정노동평가지수 등 스트레스관련 지표 및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등 관련 활동은 폭넓게 모두 인정. - 평가기준 ①의 “실제 실시한 경우”란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후 직무스트레스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평가 및 개선조치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		
증빙서류		
○ 보건관리상태보고서, 직무스트레스 평가결과(해당시)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평가항목 B.1.2.5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지도	①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를 누락 없이 실시하고 그 중 80%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	☐ 20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15
	③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실적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예방효과 거양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내분비계, 순환기계 기초질환자 및 장년 근로자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발병위험도 평가를 지도하고 사후관리 실시 내용의 적정성 평가		
☐ 평가대상 ○ <u>내분비계, 순환기계 기초질환자*</u> 보유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평가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의한 유소견자(D) 또는 요관찰자(C) 판정자 ※ 평가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장년근로자(만50세 이상) 다수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여 최종 5개소 평가 ※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지표 평균점수” 적용		
☐ 평가산식 ○ $\text{실시율}(\%) = (\text{적정 사업장수} \div \text{선정 사업장수}) \times 100$		
☐ 판단기준 ○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 내용의 적정성 확인 - 평가기준 ①의 “실제 실시한 경우”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후 발병위험도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 * KOSHA-Guide 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및 기타 평가도구를 폭넓게 인정		
증빙서류		
○ 보건관리상태보고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결과(해당시)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평가항목 B.1.2.6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지도	①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를 누락 없이 실시하고 그 중 80% 이상을 실제 작성한 경우	☐ 30
	②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20
	③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 % 이상인 경우	☐ 10
	④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 %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지도를 통한 질식재해 예방 효과 거양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지도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밀폐공간 파악, 환기, 가스농도측정, 적정보호구 착용, 사고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작업지도 내용 등 작성 포함) 내용의 적정성 평가 ※ 단순 양식 등의 제공은 인정되지 않음 ☐ 평가대상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평가) ※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지표 평균점수” 적용 ☐ 평가산식 ○ 실시율(%) = (적정 사업장수 ÷ 선정 사업장수) × 100 ☐ 판단기준 ○ 평가기준 ①의 “실제 작성한 경우”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지도 후 실제 작성을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 * KOSHA-Guide H-80-2021(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활용하여 작성	
증빙서류	○ 보건관리상태보고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해당시)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평가항목 B.1.2.7	평가기준 (배점: 30)	평가결과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지도	①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지도를 누락 없이 실시하고 그 중 80% 이상을 실제 작성된 경우	☐ 30
	②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지도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20
	③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지도실적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지도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지도를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 효과 거양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지도 내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 평가대상 ○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진 발생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 의한 분진작업 해당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 -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 사업장 우선 선정 ※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지표 평균점수” 적용 ☐ 평가산식 ○ 실시율(%) = (적정 사업장수 ÷ 선정 사업장수) × 100 ☐ 판단기준 ○ 지도내용(예시) : 환기장치(성능 등), 습기유지, 사용전 점검, 청소, 유해성주지, 세척시설, 보호구 지급 및 보관함 설치, 호흡기보호 프로그램(단,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인 경우 해당) 등 ○ 평가기준 ①의 “실제 작성한 경우”란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작성지도 후 실제 작성을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	
증빙서류	○ 보건관리상태보고서, 사업장 관리카드, 호흡기보호 프로그램(해당시)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평가항목 B.1.2.8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지도	① 청력보존프로그램작성을 누락 없이 지도하고 그 중 80% 이상이 실제 작성한 경우	☐ 20
	②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15
	③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에 의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작성지도 및 사후관리를 통한 소음성 난청 예방효과 거양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dB(A)를 초과 또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D1)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지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 평가대상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결과 소음수준이 90dB(A) 초과 또는 소음으로 인한 건강 장애(D1) 발생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 ※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지표 평균점수” 적용 ☐ 평가산식 ○ 실시율(%) = (적정 사업장수 ÷ 선정 사업장수) × 100 ☐ 판단기준 ○ 청력보존프로그램 프로그램 작성 지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인 – 평가기준 ①의 “실제 작성한 경우”란 청력보존 프로그램 작성지도 후 실제 작성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 * KOSHA-Guide H-61-201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지침)를 활용하여 작성	
증빙서류	○ 보건관리상태보고서, 청력보존 프로그램(해당시)	

B.1.3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배점: 50)	
평가항목 B.1.3	평가기준 (배점: 50)	평가결과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①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수탁사업장의 3% 미만인 경우	☐ 50
	②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수탁사업장의 6%미만인 경우	☐ 40
	③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수탁사업장의 9% 미만인 경우	☐ 30
	④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수탁사업장의 12% 미만인 경우	☐ 20
	⑤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수탁사업장의 12% 이상인 경우	☐ 10
평 가 취 지		
○ 수탁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률 제고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수탁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서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 평가대상기간 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건강분야 조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보건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수탁사업장에 대한 점유율로 평가 - 전체 수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건강분야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보건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의 점유율로 평가		
☐ 평가산식 ○ 점유율(%) = (과태료 부과 사업장수 ÷ 전체 수탁 사업장수) × 100		
☐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의 직업건강분야 과태료 처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증빙서류		
○ 공단 사전 평가		

B.1.4	위험성 평가 신청 및 인정률 (배점: 40)		
평가항목 B.1.4	평가기준 (배점: 40)		평가결과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및 인정률	신청 율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20% 이상인 경우	☐ 20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10% 이상인 경우	☐ 15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5% 이상인 경우	☐ 10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5% 미만인 경우	☐ 5
	인정 율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10% 이상인 경우	☐ 20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5% 이상인 경우	☐ 15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2% 이상인 경우	☐ 10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2% 미만인 경우	☐ 5
평가취지			
○ 수탁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한 위험성평가 이행을 제고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위험성평가 인정시스템(KRAS)을 통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신청한 사업장 비율(신청율) 및 인정심사를 거쳐 인정된 사업장 비율(인정율)을 합산하여 평가 ☐ 평가대상 ○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은 120억, 토목 150억 미만) 전수를 대상으로 평가 ※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지표 평균점수” 적용 ☐ 평가산식 ○ 신청률(%) = (위험성평가 신청 사업장수 ÷ 대상 사업장수) × 100 ○ 인정률(%)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수 ÷ 대상 사업장수) × 100 ☐ 판단기준 ○ 위험성평가(신청 또는 인정) 사업장수 산정은 평가기간 내에 신청하거나 인정된 사업장만 인정 ○ 신청사업장은 KRAS 신청 후 민원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평가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을 취소한 건은 신청 사업장수 실적 제외 ○ 인정사업장은 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 결정통지 날짜 기준임			
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신청 및 인정심사 결과(KRAS)			

B.1.5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 (감점: -30점) [신설]	
평가항목 B.1.5	평가기준 (감점: 최대 - 30점)	평가결과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기술지도 건수 x (- 5 점) [최대 - 30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수탁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특성을 반영한 기술지도 및 개선 노력도를 평가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내 기관의 K2B 입력현황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 ○ 평가년도 수탁사업장의 샘플링 최소 2개소를 선정하여 현장 확인 ※ 방문사업장은 기관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수탁사업장에 평가 당일 방문 협조 요청 [방문사업장 우선 선정 대상] - 최근 2년 이내 업무상질병 발생사업장(평가대상기간 공단 재해통계 발생기준)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50% 초과사업장 우선 선정) -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C), 유소견자(D) 다수 보유사업장 ☐ 평가산식 ○ 미흡한 기술지도 건수 x (-5 점) (최대 - 30점) ☐ 판단기준 ○ 사업장관리카드, 상태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선정된 사업장의 공정, 설비 등을 파악하고 주요 업무상질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도내용의 충실성 및 개선 노력도를 평가 ① 사업장관리카드, 상태보고서 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② 주요 업무상질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도내용이 누락된 경우 ③ 주요 업무상질병 발생공정·요인에 대한 지도내용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경우	
증빙서류	○ 기술지도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사업장관리카드, 상태보고서	

B.2 재해감소

B.2.1	업무상 질병 재해율 감소 성과 (배점: 50)		
평가항목 B.2.1	평가기준 (배점: 50)		평가결과
업무상 질병 재해율 감소 성과	'19년 대비 '20년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율과 '20년 대비 '21년 업무상 질병만인율 감소율 평균이	① 10% 이상인 경우	☐ 50
		② 5% 이상	☐ 40
		③ 5% 미만인 경우	☐ 30
	④ '19년 대비 '20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업무상질병 만인율이 감소한 경우		☐ 20
	⑤ '19년 대비 '20년 및 '20년 대비 '21년 업무상질병 만인율이 모두 증가한 경우		☐ 10
평 가 취 지			
○ 보건관리 지도 성과 평가를 통한 전반적인 보건관리 수준향상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수탁사업장의 업무상질병 감소 수준 평가			
☐ 평가대상 ○ 평가 직전년도 1년간 지속 수탁한 사업장 전수를 대상으로 평가			
☐ 판단기준 -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성과 평가 기준 ① 기준통계 : 정부 공식통계를 활용하되 공식통계 발표 이전에는 잠정통계 활용 ② 산입대상 : 업무상질병(진폐, 소음성난청 제외), 밀폐공간 질식재해 ③ 사망자 가중치 : 이환자(부상자)의 10배(사망 1명 = 이환자 10명) ④ 감소율(%) = $((\text{전년도 만인율} - \text{전전년도 만인율}) \div \text{전전년도 만인율}) \times 100$ ⑤ 감소율 평균치 = $(\text{'19년 대비 '20년 감소율} + \text{'20년 대비 '21년 감소율}) \times 100 * (1/2)$			
증빙서류			
○ 공단 사전 평가			

B.2.2	사업장 기업건강지수 보급률 (배점: 20)	
평가항목 B.2.2	평가기준 (배점: 20)	평가결과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①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를 80% 이상 실시한 경우	☐ 20
	②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를 50% 이상 실시한 경우	☐ 15
	③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를 20% 이상 실시한 경우	☐ 10
	④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를 20% 미만 실시한 경우	☐ 5
평 가 취 지	○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업의 올바른 건강증진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근로자 근로·건강특성 파악, 건강 잠재적 위험도, 건강 증진 활동 요구도, 추진수준 평가결과, 활동수준, 우수지원 분야 등 명시) 및 사후관리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 - 해당 사업장의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결과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시 적정 ☐ 평가대상 ○ 수탁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평가 ☐ 평가산식 ○ 실시율(%) = (적정 사업장수 ÷ 선정 사업장수) × 100	
증 빙 서 류	○ 상태보고서,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결과, 기업건강지수 보급관련 증빙서류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B.3.1	지도사업장 만족도 (배점: 40)	
평가항목 B.3.1	평가기준 (배점: 40)	평가결과
지도사업장 만족도	① 평가점수 합계 90점 이상	☐ 40
	② 평가점수 합계 80점 이상	☐ 30
	③ 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	☐ 20
	④ 평가점수 합계 60점 이상	☐ 10
	⑤ 평가점수 합계 60점 미만	☐ 5
평 가 취 지		
○ 지도사업장 만족도 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공단 직접조사 또는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지도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설문지는 5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20점 만점에 5점 척도로 구성 ※ 설문 문항 : ① 현장 방문 시 사전 업무준비, ② 현장에 적합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여부, ③ 보건지도인력의 적극성, ④ 보건정보의 원활한 제공, ⑤ 해당 사업장의 재해예방 기여도		
☐ 평가대상 ○ 응답 사업장 중 3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각각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 (30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 응답 사업장이 없는 경우 “이 지표의 평균점수” 반영		
증빙서류		
○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B.3.2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 노력도 (배점: 10, 가점: 최대 +20점)	
평가항목 B.3.2	평가기준 (배점: 10)	평가결과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 노력도	①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
	② 우수사례 미제출	☐ 0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여부 (가점: 최대 +20점)	
	①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 +20
	②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15
	③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10
평 가 취 지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전반적인 보건관리 수준향상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보건관리 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기관별 우수사례 심사 결과 및 수상실적을 평가 ☐ 판단기준 ○ 평가대상기간 내에 우수사례 제출 여부, 서류심사 결과 및 수상실적에 따라 평가 - 발표대회에 “대상” 없이 “최우수상”이 가장 높은 상인 경우 가점 +20점 부여	
증빙서류	○ 우수사례 발표대회 관련 문서	

B.4 재해발생 및 산재은폐

B.4.1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감점: 최대 - 100점)	
평가항목 B.4.1	평가기준 (감점: 최대 - 100점)	평가결과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업무상질병) 발생건수 ___건 × (-10)점 = _____점 중대재해(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발생건수 ___건 × (-50)점 = _____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수탁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여부 평가를 통한 보건관리 지도 내용의 현장 작동성 강화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수탁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여부에 대해 평가 ○ 업무상질병 및 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2가지로 구분하여 계약기간 내 재해발생일 기준 적용 ☐ 판단기준 ○ 평가대상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해 중 업무상질병,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질식) 재해에 한함 ○ 중대재해 중 업무상질병에 관한 재해는 발생 건수 1건당 10점 감점, 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발생은 1건당 50점 감점, 최대 100점 감점으로 평가	
증빙서류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DB	

B.4.2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감점: 최대 - 100점)	
평가항목 B.4.2	평가기준 (감점: 최대 - 100점)	평가결과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산재은폐 처벌건수 _____ 건 × (- 10)점 = _____ 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수탁사업장의 보건분야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건수를 평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재예방 의식 고취 유도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수탁사업장에서 보건분야 산재은폐(미보고, 지연보고 포함)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한 평가 ○ 보건분야 산재은폐로 처벌받은 건수 1건당 10점 감점, 최대 100점 감점으로 평가	
증빙서류	○ 지방노동관서 처벌조치 관련사항 사전 파악	

B.4.3	기술지도 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 (가점: 최대 +100점)	
평가항목 B.4.3	평가기준 (가점: 최대 +100점)	평가결과
수탁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건수 ____건 × 20점 = ____ 점	____ 점
평 가 취 지	○ 직업병 감시·중재 체계 활성화를 통한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초동대처 강화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 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발생 시 공단 일선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직업병 감시·중재 체계를 활용하여 신고 및 대응한 사례를 평가 ○ 신고 건수 1건당 20점 가점, 최대 100점 가점으로 평가 ※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사전 미인지 사안에 대한 기관 신고 시 적용	
증 병 서 류	○ 공단 일선기관별로 사전 파악	